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보관)중 “읍.면”을 “군청”으로 하고,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중 “읍.면장”을 “군수”로 하고, “총무업무담당주사”를 “건설과장이”로 한다.

제5조(사용신청)①항중 “[별지서식]”을 “[별지제1호서식]”으로하고, “읍.면장”을 “군수”로 한다.

②항중 “읍.면장은”을 “군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에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 대하여 양수장비대여대장 [별지 제2호서식]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하여야한다.

제7조(사용기간)①항중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제11조(사용료)①항중 “읍.면장은”을 삭제 한다.

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항중 “읍.면장이”를 “군수가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양수장비대여대장

일련 번호	품명	규격	관리 번호	사용기간	사용료	사용자		회수일자	비고 (전화)
						주소	성명		

신 . 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보관)..... <u>읍.면</u> <u>읍.면</u> <u>장이</u>	제3조(보관)..... <u>군청</u> <u>군수</u> <u>가</u>
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..... <u>읍.</u> <u>면장</u> <u>총무업무담당</u> <u>주사가</u>	제4조(보관관리 및 책임)..... <u>군</u> <u>수</u> <u>건설과장이</u>
제5조(사용신청)①.....[별지서식]을 <u>읍.면장에게</u> ② <u>읍.면장은</u>	제5조(사용신청)①.....[별지제1호서식]을 <u>군수에게</u> ② <u>군수는</u>
<신설>	③관리책임자는 사용승인된 양수기에 대하여 양수장비대여 대장[별지제2호서식]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.
제7조(사용기간)①..... <u>읍.면장</u> <u>이</u>	제7조(사용기간)①..... <u>군수가..</u>
제11조(사용료)①..... <u>읍.면장은</u>	제11조(사용료)①..... <u>군수는</u>
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..... <u>읍.면장이</u>	제12조(반환 및 변상)①..... <u>군수가</u>